

▣ '본말사주지인사규정' 일부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자격) ① 교구본사주지의 자격은 이 영 제6조의 추천 당시 법계 중덕 이상, <u>연령 70세 이하인</u> 비구이어야 한다.</p> <p>② 말사주지의 자격은 이 영 제6조의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이어야 한다.</p> <p>③ 제1항의 연령은 출생일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기산한다.</p>	<p>제10조(자격) ① 교구본사주지 자격은 이 <u>규정</u> 제6조 추천 당시 법계 중덕 이상, <u>만 70세 미만의</u> 비구이어야 한다.</p> <p>② 말사주지 자격은 이 <u>규정</u> 제6조 품신 당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인 승려이어야 한다.</p> <p>③ <u>삭제</u></p>
<p>제11조 (결격 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구본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p> <p>1. 주지 경력 없는 자가 교구본사주지에 추천된 경우</p> <p>가. 중무원법 제6조 제1항 제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p> <p>나.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p> <p>2. 현직 또는 전직 본·말사 주지로서 교구본사주지에 추천된 경우</p> <p>가. 중무원법 제6조 제1항 제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p> <p>나. 교육원장이 정하는 교구본사 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p> <p>다. 在任중 정당한 사유없이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명시된 분담금을 체납한 자</p> <p>라. 在任시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지정 문화재나 성보를 도난당하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p> <p>마. 在任시 중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p> <p>바.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p> <p>사. 재임시 상급 중무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시정 명령이나 견책을 받은 자</p> <p>아.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중정법 제15조의 포교국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자.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중헌 제90조 제2항, 포교법 제33조 제1항의 상임포교사를 두지 아니한 자</p>	<p>제11조 (결격 사유) <u><조 삭제></u></p>

<p>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말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p> <p>1. 주지 경력 없는 자가 품신된 경우</p> <p>가. 중무원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p> <p>나. 말사주지 자격취득에 필요한 승가고시를 거치지 아니한 자</p> <p>다. 호계원에서 징계의 사유로 심리중인 자</p> <p>2. 현직 또는 전직 본·말사 주지로서 품신된 경우</p> <p>가. 중무원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p> <p>나. 제1항 제2호의 나, 다, 라, 마, 바, 사에 해당하는 자</p> <p>다. 제2항 제1호의 나, 다에 해당하는 자</p> <p>라. 교육원장이 정하는 말사주지 연수교육 기준에 미달한 자</p> <p>마. 재임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중정법 제19조 제1항의 포교과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바. 포교법 제6조 제2항의 년 1회 포교교육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자</p>	
<p>제13조 (임명적부 심사) ① 총무원 총무부는 제7조 제1항 제5호, 제11조 제1항 제2호 나, 제2호의 라는 교육원에, 제7조 제1항 제6호는 포교원에, 제11조 제1항 제2호 다는 재무부에,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나, 제2호의 마, 바, 사, 제2항 제1호의 다는 호법부에 조회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조회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회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회신하여야 한다.</p> <p>③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 추천서 또는 말사주지 품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임명적부(任命適否)를 심사하여야 한다.</p>	<p>제13조 (임명적부 심사) ① 총무원 총무부는 제7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8조의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원조회를 거쳐 임명적부 심사를 실시한다.</p> <p>② 제1항의 조회를 의뢰받은 기관은 조회서가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총무원 총무부에 회신하여야 한다.</p> <p>③ 총무원장은 교구본사주지 추천 또는 말사주지 품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명적부(任命適否)를 심사하여야 한다. 단,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14일 이내로 임명적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 신설></p>

<p>제18조 (말사주지 품신절차) ① 직할 말사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p> <p>②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말사 주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말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명품신 공문(소정양식) 2. 삭제 3. 수행이력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5. 서약서 1부 6.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 2매(중단 대가사 수한 사진) 7. 교구본사주지가 작성한 <u>在任공적서 1부(재임일 경우)</u> 8. 전임주지 사직서 원본(전임주지가 의원사직인 경우에 한함) 1부 9. 교육이수각서 1부(신임일 경우) 10. 신도등록각서 1부(신임일 경우) 11. 사찰운영위원회 명단 1부(재임일 경우) 12. 주지 취임 후 사찰운영계획서 1부 13. <u>향건주 추천서(사설일 경우)</u> 14. 자필 유언장 1부(「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중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 15. 삭제 < 불기2554(2010).04.22> 16. 삭제 < 불기2554(2010).04.22> <p>③ 교구본사주지는 부득이한 경우 말사의 사찰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는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p>	<p>제18조 (말사주지 품신절차) ① 직할교구 말사주지는 총무원장이 임명한다.</p> <p>② 교구본사 주지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말사 주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말사주지 후보자를 총무원장에게 품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명품신 공문(소정양식) 2. 삭제 3. 수행이력서 1부 4. 가족관계등록부증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부 5. 서약서 1부 6. 구비서류 부착 외 사진 2매(중단 대가사 수한 사진) 7. 교구본사주지가 작성한 <u>재임(在任)공적서 1부(재임일 경우)</u> 8. 전임주지 사직서 원본(전임주지가 의원사직인 경우에 한함) 1부 9. 교육이수각서 1부(신임일 경우) 10. 신도등록각서 1부(신임일 경우) 11. 사찰운영위원회 명단 1부(재임일 경우) 12. 주지 취임 후 사찰운영계획서 1부 13. <u>향건주 추천서(사설일 경우) 또는 중창주 추천서(중창주 인정을 받은 공찰일 경우)</u> 14. 자필 유언장 1부(「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의 중단 출연에 관한 령」견양 참조) 15. 삭제 < 불기2554(2010).04.22> 16. 삭제 < 불기2554(2010).04.22> <p>③ 교구본사주지는 부득이한 경우 말사의 사찰관리인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교구본사주지가 임명하는 사찰관리인의 임기는 3개월 이내로 한다.</p>
<p>부칙 <불기 2553(2009). 12.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불기 2553(2009). 12. 8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불기 2554(2010). 1.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불기 2554(2010). 1. 2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4. 6 개정></p> <p>제1조 (시행일) ① 이 영 제7조(품신티레),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공포일부터 3월 후 시행한다.</p> <p>② 이 영 제7조(품신티레),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직할교구를 제외한 교구본사는 각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중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3월 후 시행한다.</p> <p>③ 이 영 제9조는 불기2555(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공포 후 2010년도에 말사주지 임명을 받은 자는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④ 이 영 제10조 제4항은 불기 2556(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영 시행일 이전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한 자는 제외한다.</p> <p>⑤ 이 영 제18조의2(미입주사찰 주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4. 6 개정></p> <p>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 제7조(품신티레),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공포일부터 3월 후 시행한다.</p> <p>② 이 규정 제7조(품신티레), 제7조의2(인사평가), 제7조의3(심의위원회)은 직할교구를 제외한 교구본사는 각 교구본사 주지가 교구중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결정한 날부터 3월 후 시행한다.</p> <p>③ 이 규정 제9조는 불기2555(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공포 후 2010년도에 말사주지 임명을 받은 자는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④ 이 규정 제10조 제4항은 불기 2556(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95년 1월 1일 이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부터 적용한다. 단, 이 규정 시행일 이전 중덕(정덕) 법계를 품수한 자는 제외한다.</p> <p>⑤ 이 규정 제18조의2(미입주사찰 주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4.22 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4.22 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10.27 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 2010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영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4(2010). 10.27 개정></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2010년도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5(2011). 11. 3></p> <p>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불기 2555(2011). 11. 3></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2024. 00. 00 개정)</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